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사회복지법인·시설 비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

기 관 명 서구, 동구, 해운대구, 사하구, 금정구, 강서구, 연제구

내 용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5조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1조의7 및 보건복지부 지침 ‘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’에 따라 후원자가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,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는 15%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, 전출금, 부채상환금, 잡지출, 예비비 및 기타, 운영충당 적립금, 환경개선 준비금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시설비의 자산취득비는 토지,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, 장비에만 구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, 아래 【표 1】과 같이 해운대구 “○○○○○” 등 3개 법인·시설은 비지정후원금을 사용불가 과목에 집행하였다.

【표 1】 비지정후원금 사용불가 과목 집행 법인·시설

(단위: 원)

구/군	구분 (법인/ 시설)	법인 (시설)명	연도	비지정후원금 지출액						
				직책 보조비	법인 전출금	부채 상환금	잡지출	예비비 반환금	적립 금	준비 금
해운대 구	시설	○○○○○	2015	0	0	0	0	4,156,170	0	0
강서구	법인	사회복지법 인 ○○○	2015	0	0	0	440,000	0	0	0
연제구	시설	○○○	2016	0	0	0	0	3,600,000	0	0

또한 【표 2】와 같이 동구 ‘○○○○○○○○○센터’ 등 9개 법인·시설은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50%를 초과하여 간접비로 사용하였으며, 아래 【표 3】과 같이 서구 ‘○○○○○○○’ 등 3개 법인·시설은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15%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.

【표 2】 비지정후원금 중 간접비 비율 50% 초과 법인·시설

(단위: 원)

구/군	구분 (법인/ 시설)	법인(시설)명	연도	비지정후원금 지출액			간접비 비율 (B/A)
				총계(A)	직접비	간접비(B)	
동구	시설	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센터	2014	250,063	0	250,063	100.0%
해운대 구	법인	○○○○○○○재단	2014	880,000	0	880,000	100.00%
			2015	1,226,400	134,600	1,091,800	89.0%
해운대 구	시설	○○○○○	2015	57,477,897	22,066,630	35,411,267	61.6%
사하구	법인	사회복지법인 ○○	2014	1,340,000	0	1,340,000	100.0%
			2015	1,617,220	0	1,617,220	100.0%
사하구	시설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센터	2016	400,000	0	400,000	100.0%
금정구	시설	○○○○○○○○○센터	2015	414,400	40,564	373,936	90.2%
연제구	법인	사회복지법인 ○○○○○○○	2014	713,720	18,550	695,170	97.4%
			2015	735,900	0	735,900	100.0%
연제구	법인	○○○○○	2014	8,877,240	3,151,620	5,725,620	64.5%
연제구	법인	○○○○○재단	2014	4,100,350	2,140	4,098,210	99.9%

【표 3】 비지정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비율 15% 초과 법인·시설

(단위: 원)

구/군	구분 (법인/ 시설)	법인(시 설)명	연도	비지정후원금 지출액					업무 추진 비 비율 (B/A)
				총 계(A)	직접비	간접비			
						계	업무추 진비 (B)	기타	
서구	시설	○○○○ ○○	2015	17,369,960	9,741,053	7,628,907	3,600,000	4,028,907	20.7%
해운 대구	법인	○○○○ ○○재단	2014	880,000	0	880,000	340,600	539,400	38.7%
사하 구	법인	사회복지 법인 ○○	2014	1,340,000	0	1,340,000	570,000	770,000	42.5%
			2015	1,617,720	0	1,617,720	330,000	1,287,720	20.4%

조치할 사항 서구청장, 동구청장, 해운대구청장, 사하구청장, 금정구청장,
강서구청장, 연제구청장은

[시정] 비지정후원금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26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시고,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